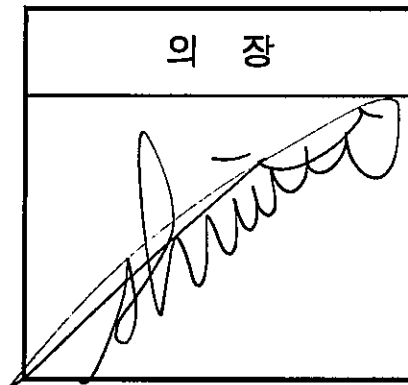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시장 제출
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

No-224



2019. 7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시장제출 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제287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

□ 재의요구안 접수

-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(관련 759)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19.7.17.(이송일 2019.6.28)
- 재의요구 사유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
 - 마을버스 적자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
 - 마을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, 의회가 조례로써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견제를 벗어나 단체장의 조직편성권한의 행사에 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음

〈제정조례안 내용〉

- ▶ 의 안 명 :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(759)
- ▶ '19. 6.14. : 제정조례안 발의(교통위원장)
- ▶ '19. 6.14. : 교통위원회 원안가결
- ▶ '19. 6.28. :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 및 집행부 이송
- ▶ 주요내용
 - 경영·서비스 평가 및 안전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
 -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및 근로형태 개선 등에 따른 인력 충원 사항 및 이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
 -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처리기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

-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정.
단,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 미 산입

※ 현재 의사일정 기준으로,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(12.16.)까지 상정기한

처리방법 :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

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제정 조례안 확정
- 본회의 상정·의결
 - 안건상정 → 재의요구 이유설명(집행부) →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
 - 질의·토론 → 표결 및 의결

향후계획

-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
10일 이내 본회의 상정

붙임 : 재의요구안 1부. 끝.

..07.18
의장